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상공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근거 신설〉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13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소상공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근거 신설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영대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1.
3. 회부연월일 : 2025. 4.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여성농어업인 및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장기간 근로를 비롯해 블랙컨슈머, 매출 하락과 감정노동 등 여러 스트레스 요인과 자영업의 특성이 자영업자의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음에도 건강 증진에 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평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자영업자 중에서도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건강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이에 소상공인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의 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제12조의8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상공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근거 신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소상공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진단의 시기, 항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12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은 같은 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② 건강진단의 시기, 항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연구¹⁾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와 비교하여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그중에서도 유급 종업원이 없는 ‘자영자’²⁾의 건강 상태가 가장 나쁘게 나타났다.

동 연구에 따르면, 자영업 자체의 특성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는바,³⁾ 이는 정부 지원 정책의 방향 수립 시 취약한 환경에 놓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건강 제고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함.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1) 홍정림, “자영업자의 건강: 종사상 지위별 건강 격차”, 「보건사회연구」 제44권 제4호, 2024, pp.344-364.

2) 동 연구에서는 자영업자 중 유급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고용주’로, 유급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자영자’로 구분하였음.

3) 다만, 동 연구는 자료상의 한계로 자영업의 어떤 특성이 자영업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힘.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정신적 스트레스, 감정노동 및 반사회적 행동 경험 등의 사회·심리적인 근로환경 요인, 장시간 근로 및 물리·화학적 근로환경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나, 동 연구에서는 종사상 지위별 건강 격차를 유발하는 경로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설명함.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및 동 시행규칙 별표22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화학적 인자(유기화합물, 금속류 등)
2. 분진
3. 소음, 진동 등 물리적 인자
4. 야간작업

개정안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소상공인이 특수 건강진단⁵⁾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스스로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체계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아닌 소상공인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지원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바, 잠재적 지원 대상의 규모 및 재정소요 파악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5)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건강진단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 혹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해당 근거를 둘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이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⁶⁾

현재 시점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소상공인을 파악하거나 소상공인이 노출되는 유해인자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개정안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을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어렵다고 보았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특수건강진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이 정책 추진의 일관성 및 법체계적 통일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임.

6) 국회예산정책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025.4.24.

법제처는 개정안이 건강진단의 실시 주체에 관한 내용 없이 건강진단의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받는 건강진단과 다른 특별한 형태의 건강진단이 제공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규정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건강검진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⁷⁾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65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340호)